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0-52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.

2010년 9월 1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정사업본부 공고 폐지에 관한 공고

1. 폐지공고 내역

- 가. 다량의 내용증명 전자우편 발송 시험적서비스 시행 공고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-11호)
- 나. 환부취급수수료 사전납부 시험적서비스 시행 공고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-50호)
- 다. 계약등기 시험적서비스 시행 공고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0-2호)

2. 폐 지 일 : 2010년 9월 1일